

4. 대학원장학금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37조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2.8.자구수정)(2022.6.21.자구수정)

제2조(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①대학원의 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장학금 종류별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2006.6.5.개정)(2016.12.14.개정)(2022.6.21.자구수정)

1. 신입성장학금: 매 학기 신입학한 학생
2. 근로장학금: 학생조교로 채용되어 행정·교육·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학생
3. 직장인장학금: 학기 시작일 기준 전일제 직장인 및 시간제 직장인(2019.7.23. 자구수정)
4. 학생회장장학금: 원우회 회장, 총무로 봉사중인 학생
5. 국가고시장학금: 재학 중 입법, 행정, 기술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학생
6.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총장이 장학대상으로 인정한 외국인 유학생
7. 특별장학금: 공무원 등 3급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학생
8. 추천장학금: 경제적 곤란, 특별 기여 등의 사유로 대학원장이 제청(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학생
9. 모교장학금: 본교 학부 출신인 학생
10. 가족장학금: 가족(배우자, 직계) 중 2명 이상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11. 협약기관재교육위탁학생장학금: 우리 대학과 직원 재교육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재직 중인 학생
12. 학교법인 재직자장학금: 꽃동네현도학원 및 그 산하 대학 및 학교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학생(2019.7.23. 자구수정)
13. 수도자장학금: 유기서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2019.7.23. 신설)
14. 협약대학장학금: 우리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에 입학한 학생(2022.12.6. 신설)

②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대학원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근로장학금 지급자격) 근로장학금은 조교로서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전일제 학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칭한다.

직장(자영업 포함)에 근무하지 않고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며 주5일 이상 학교에 있으면서 행정과 교육,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학생.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정) 모든 장학생은 대학원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대학원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된다. 다만, 근로장학금 지급자는 별도의 임용 절차에 따라 선정되며, 신입성장학금과 학생회장장학금에 한하여 복수로 선정 할 수 있다.(2006.6.5.개정)(2016.12.14.단서조항삼입)

제6조(장학생의 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성적우수 장학금 및 기타의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복학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해제
4. 기타 학칙위반자

제7조(장학금 지급 유효기간) ①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한다. 다만, 휴학을

하는 자가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까지 유효하다.

②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대학원장학위원회) ①대학원의 장학생선발과 장학금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장 학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입학처장, 기획관리처장 등 7인으로 하며, 간사는 대학원 교학부 행정직으로 한다.(2016.12.14.개정)(2019.2.8.개정)

③이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2016.12.14.자구수정)

④삭제(2016.12.14.삭제)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2016.12.14.삭제)

별표2) 교외 장학금

장학금명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조건	비고
동문회장 학금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	해당 장학금 지 규정에 준한다,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한다,	2008.3.1.시행